

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

(한갑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5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04. .

발 의 자 : 한갑수·황효진 의원(2인)

□ 제안이유

- 근면·자조·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회원,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.
(안 제2조)
- 나.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 함.(안 제3조)
- 다.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국·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 함.(안 제4조)
- 라.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 함.(안 제5조)
- 마.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함.(안 제6조)
- 바.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함.(안 제6조)
- 사.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.(안 제7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○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·4조

○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4조, ○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」 제10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249,123천원

○ 새마을회 사업지원 : 132,723천원

○ 새마을문고 사업지원 : 116,400천원

※ 2012년도 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하였음.

사전예고(결과) :

○ 입법예고 : 2012. 4. .() ~ 4 . .(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○ 경기도 시·군 새마을지회 조례 제정현황

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
2.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·활동경비
3.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·외 연수·훈련 경비
4. 그 밖의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제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 대부) 시장은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4조에 따라 국·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지도 및 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보험가입)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5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2. 4. 20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□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 제4조의 경우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4조에 따라 국·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
- 동법 제4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·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·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·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·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·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,
-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 조직은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조례의 적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때는,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

-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의 규정 중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제외하고 공유재산에 국한하여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에 한해 대상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안산시 새마을조직에 공유재산이나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것은 안산시장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므로,
-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에 한해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.(안 제4조)

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 조명을 “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”에서 “공유재산의 무상대부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4조에 따라 국·공유 재산”을 “안산시 소유 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<u>국·공유재산의 무상 대부</u>) 시장은 「<u>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</u>」 제4조에 따라 <u>국·공유재산</u>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<u>공유재산의 무상 대부</u>) ----- <u>안산시 소유 공유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